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4. 12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7. 11. 박정의원 등 14인

나. 회부일자: 2024. 7. 1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4. 9. 26.) 상정 · 제안설명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4. 11. 22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
안반영폐기)

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4. 11. 28.) 상정 · 소위심
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정의원)

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

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2023년 11월 기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개설되었고, 휴폐업을 제외하고 약 67%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음.

그러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의 경우 9.1%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, 같은 해 개장한 군산공설시장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등은 영업률이 100%에 이르는 등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청년몰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, 청년몰 인지도는 64%, 이용경험률은 31%고, 만족률은 51.2%로 불만족률 7.2%보다 7배나 높게 나오는 등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이에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,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유인규)

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라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, 전통시장 등에서의 청년상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상인 육성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, 전문기관의 업무와 기능,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추진과 전문기관의 업무 간 관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박성민 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박정의원·서일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.

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‘전주’를 ‘전봇대’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임.

6. 심사결과

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